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9	3	1997. 2. 6.	총재 이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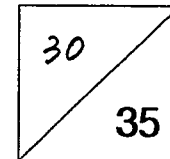
의안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제72조

법규조항

제의취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용 토지매입자금의 여신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대
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 및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
가 큰 부문을 제외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 ① (생략)
-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한국은행법 제72조

- ① (생략)
-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붙임)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여신의 금지) 금융기관이 <별표>의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4. (생략) < 별 표 > 여 신 금 지 부 문 1. 토지의 매입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한다. 가. 서민주택건설용 나. 여신취급일(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중 선분양되는 산업단지의 입주예정업체인 경우에는 토지분양대금 최종회차분 납일일과 산업단지조성 완공일중 조기도래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 다. 실수요자의 농지용 라.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학교법인의 교지용 마. 비영리법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사옥건설용 (신설) 2. (생략)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 별 표 > 여 신 금 지 부 문 1. 토지의 매입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용 2. (현행과 같음)	- 여신금지부문에서 제외

현행		개정 (안)		비고
3.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3.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명	
3694중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3694중	(현행과 같음)	
55104중	콘도미니엄업(다만,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55104중	(현행과 같음)	
5521중	건평 또는 대지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1.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 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5521중	(현행과 같음)	
5522	주점업	5522	(현행과 같음)	
55232	다방업		(삭제)	-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65929중	전당업		(삭제)	-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70	부동산업(다만,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증·개축 자금은 제외)	70	(현행과 같음)	
92191중	「댄스홀」, 「댄스」 교습소	92191중	(현행과 같음)	
92193	전자오락실운영업		(삭제)	-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92431중	「헬스클럽」		(삭제)	-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92434	골프장운영업	92434	(현행과 같음)	
92437	당구장운영업		(삭제)	-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92496	도박장운영업	92496	(현행과 같음)	
93092중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93092중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 여신금지업종에서 사우나탕업을 제외

현행	개정 (안)	비고
제4조~제8조 (생략) (신설)	제4조~제8조 (현행과 같음)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2. 10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10년이상 15년내 주택자금의 최고대출한도 결정」 (1987.11.19 제31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주택자금의 10년이상 대출취급 허용 결정」 (1994.6.16 제14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자 명시 - 은행법 개정(1997.1.13)으로 은행대출의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금통운위 의결 폐지

(참 고)

10년이상 15년이내 주택자금의 최고대출한도 결정

1987. 11. 19 금통운위 의결

1.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주택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10년이상 15년이내의 기한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원금잔액의 5배 이내로 한다.
2. 시행일자 : 1988. 1. 1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주택자금의 10년이상 대출취급 결정

1994. 6. 16 금통운위 의결

1.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4호에서 정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관련하여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10년이상의 기한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시행일자 : 1994. 6. 16